



의안번호	제 2021 - 14호
보 고 연 월 일	2021. 6. 7. (제110차 정기회의)

보
고
안
건

운영지원단 업무보고

제 출 자	운영지원단장
-------	--------



목 차

I. 전문위원 회의 업무 지원	1
II. 양형기준 관보 게재 보고	2
1. 개요	2
2. 추진 경과	2
III. 양형기준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3
1. 개요	3
2. 추진 경과	3
IV. 2021년도 상반기 지방양형자료분석관 직무교육	4
1. 목표	4
2. 교육기간 및 장소	4
3. 교육 과정	4
4. 교육 대상자(지원자) 및 강사	4
5. 교육 내용	4
V. 제8기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설정·변경 대상 범죄군 등에 관한 의견조회 결과 보고	6
1. 개요	6
2. 회신 의견 종합	7

가. 각급 법원	7
나. 법무부	15
다. 경찰청	16
라. 대한변호사협회	22
마. 대한법무사협회	25
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25
사. 농림축산식품부	32

VI. 각종의견 접수 및 처리 37

1. 제이티비씨(JTBC)	37
2. ‘양형위원회에 바란다’ 접수의견 보고	39
3. 서면 질의 등 민원 및 회신	44

I. 전문위원 회의 업무 지원

- 운영지원단은 전문위원 전체회의의 회의자료 준비, 회의록 작성 등의 지원업무를 수행하였음
- 전문위원 전체회의 개최 현황

회의명		일 시	안 건
전문위원 전체 회의	제140차	2021. 5. 24. 16:00	○ 제8기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설정 및 수정 대상 범죄군 선정 관련 검토

II. 양형기준 관보 게재 보고

1. 개요

- 양형위원회는 법원조직법 제81조의6 제4항 및 양형위원회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가 의결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보에 양형기준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도록 되어 있음
- 이에 양형위원회 제108차 회의에서 의결된 『주거침입범죄』, 『환경범죄』 양형기준,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수정 양형기준을 관보 게재를 통하여 공개하였음

2. 추진 경과

- 2021. 3. 29. 양형위원회 제108차 회의에서 주거침입범죄, 환경범죄 각 양형기준,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수정 양형기준 의결
- 2021. 4. 6. 행정안전부에 관보 게재 의뢰 공문 시행
- 2021. 4. 19. 양형기준 관보 게재
(<http://gwanbo.go.kr>)

III. 양형기준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1. 개요

- 양형위원회에서 의결된 양형기준은 형사재판절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이를 공개할 필요가 있음
- 인터넷 홈페이지(<http://sc.scourt.go.kr>)에 양형기준을 공개하는 것은 양형기준을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양형기준 개선 논의를 활성화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이에 최종 의결된 『주거침입범죄』, 『환경범죄』 양형기준,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수정 양형기준을 양형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2. 추진 경과

- 2021. 4. 6. : 홈페이지 게재 의뢰(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

시행일	범죄군	게재 경과
2021. 7. 1.	· 주거침입범죄, 환경범죄 양형기준 ·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수정 양형기준	2021. 5.말 게재

IV. 2021년도 상반기 지방양형자료분석관 직무교육

1. 목표

- 양형자료조사, 양형기준 운영점검 등 양형자료분석관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이론과 실무능력 배양
- 신규 양형자료분석관에 대한 사례위주의 실무교육을 통해 즉각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토록 지원
- 양형자료분석관 인사이동으로 인한 업무 공백 최소화 및 업무 연속성 확보

2. 교육기간 및 장소

가. 교육기간

- 2021. 4. 15.(목) ~ 16.(금)

나. 장소

- 법원공무원교육원(제315호 멀티전산실)

3. 교육 과정

- 양형자료조사 및 운영점검 업무 교육

4. 교육 대상자(지원자) 및 강사

- 교육 대상자(7명): 지방근무 양형자료분석관
- 교육 강사 : 운영지원단장 외 3명

5. 교육 내용

- 양형위원회와 양형자료분석관
 - 양형위원회 조직 및 기능

- 양형자료분석관의 위상과 주요업무
- 양형기준 운영점검
 - 양형기준에 대한 이해와 적용
 - 양형기준 운영점검에 관한 이론 및 분석방법
 - 양형기준운영점검시스템 매뉴얼 안내 및 사용방법 실습

V. 제8기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설정·변경 대상 범죄군 등에 관한 의견조회 결과 보고

1. 개요

제8기 양형위원회에서 양형기준을 설정하거나 변경할 필요성이 있는 범죄군과 연구·심의가 필요한 양형정책에 관하여 양형위원회규칙 제11조, 양형위원회 운영규정 제17조 제1항에 따라 대법원, 국회, 법무부 등 28개 관계기관과 단체들을 대상으로 의견조회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아래와 같음

가. 조회 기간

- 2021. 3. 22. ~ 2021. 4. 13.

나. 회신 기관

- 각급 법원
- 법무부
- 경찰청
- 대한변호사협회
- 대한법무사협회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다. 의견조회를 받지 않은 기관 중 회신한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라. 회신자료

- 별첨 「제8기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설정·변경 대상 범죄군 등에 관한 의견조회 회신 자료」 와 같음

2. 회신 의견 종합

가. 각급 법원

(1) 서울고등법원

○ 바람직한 양형조사실무 방안의 모색

1) 현황 : 양형조사를 위한 법원조사관 업무 여건의 개선 및 역량 강화 필요

- 현 실무는 법원조사관이 피고인을 면담하여 그 내용을 정리하는 데 그치고 있어, 활용도가 높지 않은 실정임
- 반면 보호관찰관의 판결전 조사는 피고인 면담결과 이외에도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정리하는데 전문성을 갖고 있음

2) 과제 : 법원조사관 업무의 이원화 및 협업 도모

- 법원조사관의 양형조사 업무를 2가지 방향으로 이원화시킴
- [조사방법1] 유사사례 정리(판결문 검색), 양형기준 및 양형인자 분석결과를 검토보고서 형식으로 정리하여 제출하되, 사전에 검사, 변호인의 의견청취절차를 거치거나 재판부와 협의절차를 거친 이후 최종보고서를 제출함 (부적절한 사례 분석으로 불필요한 선입견이나 오해를 방지할 필요가 있음)
- [조사방법2] 전문심리위원 또는 보호관찰관과의 협업절차를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 최근 전문화되는 사건 유형에 따라 전문심리위원 후보자 섭외, 사전 의견청취절차 및 질의사항 확정 등의 절차를 법원조사관이 주도할 수 있도록 한다면 전문심리위원 활용도가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2) 대구고등법원

1) 정치자금법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설정

- 정치자금법위반 범죄, 특히 정치자금 수수 등 당선유무효와 관련된 범죄에 관한 양형기준이 추가로 설정되었으면 함
- 공직선거법위반 사건과는 달리 정치자금법위반 사건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

지 않음

- 그러나 공직선거법위반 범죄와 함께 정치자금법위반 범죄도 함께 기소되는 경우가 많고, 이 경우 공직선거법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사실상 무력화(하한만 준수)되는 현상이 발생함

2) 성범죄 중 준강간, 준강제추행에 대한 양형인자 추가 설정

- 현재 양형기준은, 준강간·준강제추행에 대하여 폭행·협박으로 인한 강간·강제추행과 동일한 양형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 준강간·준강제추행 사건 중 대다수는, 피고인이 성범죄를 저지를 의사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취할 것을 기다린 후 범행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과 피해자가 지인 등의 관계로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취하여 모두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성관계에 대한 동의 여부가 명확치 않음에도 범행에 나아간 경우가 많음(주로 사후에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러한 상태를 인식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이 됨) → 이 경우 폭행·협박으로 인한 강간·강제추행 범죄와 비교하였을 때 죄질, 비난가능성이 동등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움. 실제 사건의 양형에서도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임
- 그럼에도 양형기준에서 이러한 사정을 반영할 만한 요소는 피고인의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정도인데, 사실상 심신미약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거의 없음
 - 일반 양형가중인자로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강간한 경우’도 있지만, 피해자에게 강제로 술 등을 먹이지 않는 이상 위와 같은 유형의 사건에서 양형 차이점으로 작동하기는 어려움
- 이러한 유형의 준강간·준강제추행 사건에 대한 실제 양형을 조사하고, 만약 폭행·협박으로 인한 강간·강제추행 사건에서의 양형과 뚜렷한 차이가 있다면 관련 사정을 양형요소로 반영할 수 있도록 적절한 양형인자가 설정되었으면 함

(3) 부산고등법원

- 1) 제8기 양형위원회가 양형기준을 새롭게 설정하거나 변경할 필요성

이 있는 범죄군에 관한 의견

- 없음

2) 제8기 양형위원회의 연구·심의가 필요한 양형정책에 관한 의견

- 다양한 범죄군에 벌금형 양형기준 마련이 필요함

(4) 의정부지방법원

1) 화이트칼라 범죄(사기, 뇌물, 횡령, 배임, 조세범 등)에 대한 양형 기준 적절성 검토 필요

2) 성 착취물 영상 제작 등에 관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설정 검토 필요

3) 단순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벌금형이 자주 선고되는 범죄에 대한 벌금형 양형기준 설정 검토 필요

(5)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1) 문제의식

○ 현행 교통범죄 양형기준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의 개정 내용과 취지가 적절히 반영되었는지 의문이 있음

○ 따라서 현행 교통범죄 양형기준의 수정 필요성이 있는지, 필요성이 있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수정할 것인지 검토 필요

2) 현행 교통범죄 양형기준 및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

가) 현행 교통범죄 양형기준

○ 현행 교통범죄 양형기준의 수정 경위

- 현행 교통범죄 양형기준은 2020. 4. 20. 수정 의결되어 2020. 7. 1.부터 시행

- 당시 수정 배경은 특가법 제5조의11이 2018. 12. 18. 개정·시행되어 위험운전 교통사고의 법정형이 높아지고 국민적 관심이 높아 일반 교통사고와 유형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

- 이에 1) 종래 일반 교통사고 유형에 속했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를 별도로 분리하여 「위험운전 교통사고」 유형을 신설하면서 형량범위를 상향했고, 2) 위험운전 교통사고 유형에서 「음주운전 등의 경우」를 특별가중인자에서 제외하는 대신 동종누범 전과에 음주운전 전과를 포함시켰으며, 3) 교통사고 후 도주 유형도 위험운전 교통사고 유형과 균형을 맞추고 엄정한 양형을 권고하는 의미에서 일부 형량범위를 상향함¹⁾

○ 현행 교통범죄 양형기준의 유형과 형량범위

- 일반 교통사고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교통사고 치상	- 8월	4월 - 1년	8월 - 2년
2	교통사고 치사	4월 - 1년	8월 - 2년	1년 - 3년

- 위험운전 교통사고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위험운전 치상	6월 - 1년6월	10월 - 2년6월	2년 - 5년
2	위험운전 치사	1년6월 - 3년	2년 - 5년	4년 - 8년

- 교통사고 후 도주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치상 후 도주	6월 - 1년6월	8월 - 2년6월	1년 - 5년
2	치상 후 유기 도주	1년6월 - 2년6월	2년 - 4년	3년 - 7년
3	치사 후 도주 (도주 후 치사)	2년6월 - 4년	3년 - 5년	4년 - 8년
4	치사 후 유기 도주 (유기 도주 후 치사)	3년 - 5년	4년 - 6년	5년 - 10년

- 현행 교통범죄 양형기준은 ‘일반 교통사고’ 유형이나 ‘교통사고 후 도주’의 유형에서 음주운전 등을 특별가중인자로 두면서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

1) 코트넷 게시판 공지사항 중 2020. 5. 11.에 게시된 ‘교통범죄 수정 양형기준 시행 안내’의 첨부파일인 양형위원회가 작성한 ‘교통범죄 수정 양형기준 설명자료’ 참조

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함

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개정 내용: 법정형 약 2배 대폭 상향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개정 도로교통법 (2018. 12. 24. 개정, 2019. 6. 25. 시행)
<p>제148조의2(벌칙)</p> <p>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44조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p>②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혈중알콜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콜농도가 0.1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콜농도가 0.05퍼센트 이상 0.1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p>제148조의2(벌칙)</p> <p>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3) 현행 교통범죄 양형기준의 문제점

가) 양형기준의 권고형 상한이 법정형의 하한에 미치지 못하는 문제

- 특히 2회 이상 또는 0.2% 이상의 음주운전(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항 제1호)이 결합된 음주 교통사고에서 양형기준의 권고형 상한이 법정형의 하한에도 미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1) 2회 이상 음주운전이지만 위험운전은 아니어서 일반 교통사고 중 교통사고 치상 유형에 속하는 경우: 음주운전은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가중인자로만 취급. 그런데 교통사고 관련 경미한 상해 또는 처벌불원과 같은 감경인자가 있다면 가중인자 중 하나에 불과한 음주운전은 상쇄되어 기본영역(4월 ~ 1년) 또는 감경영역(8월 이하)에 포섭. 그 결과 권고형 상한이 법정형 하한인 징역 2년에 미치지 못함

2) 0.2% 이상의 음주운전 교통사고로서 위험운전 치상 유형에 속하는 경우: 음주운전은 유형결정에만 반영되고 동종 누범이 아닌 이상 가중인자에도 해당하지 않음. 따라서 교통사고 관련 경미한 상해 또는 처벌불원과 같은 감경인자가 있는 경우 감경영역(6월 ~ 1년 6월)에 포섭되어 권고형 상한이 법정형 하한인 징역 2년에 미치지 못함

3) 0.2% 이상인 2회 이상 음주운전 교통사고 등 음주운전의 위법성이 중한 경우: 마찬가지로 음주운전은 유형결정에만 반영되고 음주운전의 위법성 정도는 가중인자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2)항과 마찬가지로 결과

- 이에 대해서는 교통사고 관련 감경인자가 있다면 작량감경을 통해 법률상 처단형을 조정할 수 있다는 반론이 가능함. 그러나 현행 교통범죄 양형기준에 따라 전형적인 특별감경인자로 문제되는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등은 음주운전의 가벌성과는 전혀 무관한 요소들임

- 특히 단기간에 반복된 2회 이상의 음주운전, 0.3% 이상의 음주운전 등 음주운전 자체에 대해서는 아무런 감경 사유가 없고 가벌성이 큰 경우임에도, 교통사고에 대한 감경 사유들을 이유로 작량감경을 하여 법률상 처단형을 조정하는 것은 개정 도로교통법의 입법 취지에 어긋나므로 적절하지 않음

- 한편 개정 도로교통법이 특히 2회 이상 음주 또는 0.2% 이상의 음주운전에 대한 법정형을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로 대폭 상향한 것이 다른 범죄들[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의 법정형 하한은 징역 1년]과의 균형에 맞는 입법이었는지 논란의 여지가 있음. 그러나 일단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라는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여 도로교통법이 개정된 이상²⁾ 사법부

2) 2018. 12. 24. 도로교통법 개정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처벌은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비해 가볍다는 지적이 있으며, 최근 부산에서 발생한 음

로서는 이를 존중해야 하고 양형기준에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봄

나) 음주운전 처벌 강화 입법취지를 사망 사건 양형기준에 반영할 필요성

- 현행 교통범죄 양형기준에 따른 사망 교통사고의 권고형 상한
 - 기본영역: 일반 교통사고 치사 2년, 위험운전 치사·치사 후 도주 5년
 - 가중영역: 일반 교통사고 치사 3년, 위험운전 치사·치사 후 도주 8년
 - 특별가중영역(2개 이상 특별가중인자 이유로 가중영역 권고형 상한을 1/2 까지 가중): 교통사고 치사 4년 6개월, 위험운전 치사·치사 후 도주 12년
- 이러한 권고형 상한은, 교통범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경합범 가중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큰 차이가 있음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징역 7년 6개월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죄: 각 무기 또는 징역 35년(합산 범위 내)
- 물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상한도 결코 낮은 형량이 아니고 엄벌주의 만이 능사는 아니며 현재도 사안에 따라 양형기준을 이탈한 중형 선고 가능. 하지만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큰 차이가 있는 현행 양형기준에 따른 형량범위가 일반 국민들의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대한 법 감정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은 고민할 필요가 있음
-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 정책적으로 보다 깊은 논의가 필요. 다만 사건으로는 가중영역의 권고형 상한은 최대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일치시키되(ex. 살인범죄의 경우 권고형 상한은 무기징역), 음주 사고의 특성에 맞는 양형인자들을 추가하는 방법으로 불합리한 처벌을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

4) 교통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가) 교통범죄 유형 재분류

- 현행 ‘위험운전 교통사고’ 유형에 특가법상 위험운전 뿐만 아니라 일반 음주운전 교통사고도 포함시키고, 유형 명칭을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변경하며, 세부 구분을 ‘음주운전 치상’, ‘음주운전 치사’로 변경

주운전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이에 음주상태의 혈중알코올농도 기준, 법정형 수준, 운전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 수준을 강화하고 운전면허 취소 시 재취득이 제한되는 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임.

- 현행 ‘교통사고 후 도주’ 유형 내에도 ‘음주 치상 후 도주’, ‘음주 치사 후 도주’ 유형을 신설
- 유형분류 요소로 포함된 ‘음주운전 등의 경우’를 현행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후 도주’의 특별가중인자에서 제외

나) 음주운전의 전형적인 특성 반영한 세부적인 특별양형인자 추가

- 가중요소: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회 이상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 감경요소: 혈중알코올농도 0.08% 미만, 음주운전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예컨대 출산, 질병으로 인한 응급상황 등) 등

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유형 형량범위를 개정 도로교통법 법정형 반영하여 상향

- 예컨대 음주운전 치상의 경우
 - 감경영역의 상한을 기존의 ‘1년 6월’에서 ‘2년 6월’로 상향: 이렇게 보면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이라는 2가지 감경사유가 있고 ‘0.2% 이상’이라는 1가지 가중사유가 있어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감경영역 형량범위 내에 포섭됨
 - 기본영역 형량범위를 기존의 ‘10월 ~ 2년 6월’에서 ‘1년 ~ 3년 6월’로 상향: 하한은 가장 일반적인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의 법정형 하한을 반영하고, 상한은 중한 음주운전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및 제3항 제1호 법정형 범위의 중간 값을 반영
- 이에 균형을 맞추어 교통사고 후 도주 유형에 신설된 ‘음주 치상 후 도주’, ‘음주 치사 후 도주’의 경우도 형량범위를 상향

라) 음주 사망 사건의 가중영역 상한을 법률상 처단형 상한에 맞게 조정

- 특별가중영역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최대한 근접하도록 상향
 - 예컨대 음주운전 치사의 경우 가중영역의 권고형 상한을 20년으로 상향하면, 그 특별가중영역(1/2 가중)의 상한인 30년은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인 35년에 근접하게 됨

(6) 청주지방법원

○ 장애인에 대한 성범죄 양형기준 중 특별양형인자에 관한 검토

1) 문제 사안

- 지적장애인 남성인 피고인이 지적장애인 여성인 피해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성관계를 강행한 결과 피해자에게 처녀막 파열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고인은 법정형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6조 제1항)로 기소되었다.
- 피해자는 장애인 등록이 된 지적장애인은 맞지만, 피고인보다 더 가벼운 정도의 지적 장애가 있었고, 영상녹화 등을 통해 보면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는지조차 알기 어려워보였으며, 피고인도 지적장애가 있지만 심신상실이냐 미약의 정도에 이르는 않은 상태였다(즉, 이 사건에서 현 양형기준상 피해자의 처벌불원 외에 적용할 수 있는 특별양형인자 중 감경요소가 없는 상태임).

2) 문제 의식 및 의견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제8조(강간 등 상해·치상)의 법정형은 강간을 기준으로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그 형이 높은 편이고,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를 13세 미만, 13세 이상 16세 미만, 16세 이상으로 세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장애인에 대한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인 장애인의 장애의 종류, 정도 등을 세분화하여 규정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 이 사건에서 장애인을 성폭행한 가해자가 장애인인지 비장애인인지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양형상 같이 취급할 수 있는지, 가해자의 장애 유무, 종류나 정도에 따라 양형상 달리 취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지에 관한 양형적 측면의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나. 법무부

(1) 부동산 투기 범죄군에 관한 양형기준 신설 필요

- 최근 사회적 논란이 제기된 부동산 투기 범행에 관한 양형기준 마련 필요
- (2)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강화 필요**
 - 기술유출 범죄에 대해 '19년 법 개정으로 상향된 법정형을 반영하고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양형기준 상향 필요
- (3) 유사수신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변경·강화 필요**
 - 유사수신 범죄의 실태를 반영하여 피해액을 우선적인 양형인자로 반영하고 형량범위 상향 필요
- (4) 치사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강화 필요**
 - 사람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침해를 가져오는 치사 범죄군에 대해 법감정에 부합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양형기준 상향 필요
- (5) 국제뇌물방지법 관련 양형기준 확립 필요**
 - OECD의 해외뇌물사건의 제재조치 강화 권고를 반영하여 현행 양형기준에 국제뇌물방지법위반 행위를 추가 필요
- (6) 인신매매 관련 양형기준 확대 및 강화 필요**
 - 현행 인신매매 양형기준에 범죄군을 확대하고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 상향 필요

※ 항목별 상세내용 별첨

다. 경찰청

(1)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

1) 현황분석

- 공무집행방해 처벌 현황

(대검찰청 「범죄분석」 · 법원행정처 「사법연감」 기준)

- 최근 10년간 연평균 13,747건의 공무집행방해 발생, 주취 상태에서의 범행 비율이 60%를 상회하고 동종전과자에 의한 범행이 상당수
- 공무집행방해 발생 건수와 기소 건수는 증가한 반면 구속 건수는 감

소, 2000년대 이후 자유형이 아닌 집행유예·재산형 선고 비율이 급증
 ※ 공무집행방해와 법정형이 동일하고 성격이 유사한 ‘위증죄’의 경우 제1심 재판에서 자유형, 집행유예, 재산형, 기타 선고 비율이 매년 일정 수준으로 유지

- 주요 외국에서는 폭행·협박에 한정하지 않고 공무집행방해 행위 태양을 폭넓게 인정하거나, 보다 중하게 처벌하는 입법·양형 경향 등 확인

○ 공무집행방해 판례 및 양형 분석

- 양형 감경 요소로서 피고인의 범행 반성·자백이 주요하게 고려되고, 벌금형 선고 시 이와 함께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도 고려하는 경향

※ 양형 인자에는 ‘범행 반성·자백’이 없음에도 실질적으로는 양형에 영향

- 집행유예의 선고 요소로서도 피고인의 범행 반성·자백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주취 상태·우발적 범행 여부 등을 주요하게 고려

○ 공무집행방해에 대한 인식 조사

- 국민과 경찰관들은 피고인의 주취 상태를 양형에 고려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응답한 반면, 범죄 전력(상습성) 고려에 대해서는 긍정적 응답

- 경찰관들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양형에 고려하는 것에 대해 다소 부정적 응답, 이를 주요 양형 요소로 고려하는 양형 실무와 배치

2) 현장 경찰관 의견 및 관련 기관 입장

○ 현장 경찰관 의견

- 현장 경찰관들은 공무집행방해 범죄로 인한 육체적·심적 고통이 상당함에도 여전히 경미한 처벌에 그치고 있다며 사기·의욕 저하 호소

▶ “수많은 범죄 현장에서 위험에 노출되는 경찰관들이 오히려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으로, 범죄를 제압해야 할 경찰관들의 근무 의욕이 저하된다.” (서울 ○○署)

▶ “합의만 해주면 금방 풀려나게 되니, 피의자 가족이 계속 근무지로 찾아와 합의 요청을 해 근무에 지장이 많다.” (충남 ○○署)

- 또한, 공무집행방해에 대한 경각심이 없어지며 반복적인 범행으로 이어져 결국 국민의 피해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우려 표시

▶ “반복적인 난동 행위를 하는 공무집행방해 사범 제압에 30~40분 시간을 쓰게 되면, 다른 신고 출동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 (전북 ○○署)

◦ 공무집행방해 관련 언론·국회 입장

-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가벼운 처벌을 비판하는 기획성 기사 다수 보도

보도추이	최근 5년간 매년 2건 이상 관련 보도 / ('15년) 3건 → ('16년) 2건 → ('17년) 5건 → ('18년) 17건 → ('19년) 4건 → ('20년) 3건
주요기사	△ '사건 불만' 술 취해 파출소에서 흥기 난동 - MBN('21.3.29.) △ 경찰 매맞고 욕먹어도 법원 '숨방망이 처벌' - 서울경제('20.8.3.) △ 언어 맞는 경찰... 처벌은 '숨방망이' - 경남신문('20.5.26) △ 뺨 맞고 성기 잡히는 경찰관, 처벌은 숨방망이 - 뉴스핌('20.1.23) △ 뺨 때리고 목 조르고...'민중의 지팡이' 수난시대 - 세계일보('18.8.12.)

- 다수 국회의원들은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대한 처벌 강화 취지 법안을 발의하고 있으며, 엄정 처벌 및 적극적인 대응 필요성을 지속 강조

▶ (법안발의) △ '18. 8. 3. 형법 개정안(박인숙 의원 등) - 공무집행방해 처벌기준 상향 (5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 10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

△ '18. 8. 31. 경직법 개정안(이용호 의원 등) - 주취자의 경찰관 공무집행 방해에 대한 가중처벌(동종 재범 시 심신미약 제외)

▶ (관련질의) △ '20. 7. 16. 인사청문회 서면질의(이해식 의원) - 주취자 경찰관 폭행 대응계획

△ '19. 10. 30. 종합감사 서면질의(강창일 의원) - 주취자 공무집행방해 엄정 대응

△ '19. 10. 23. 종합감사 현장질의(홍문표 의원) - 공무집행방해 엄정대처 필요

3) 양형기준 관련 개선 요청사항

◦ 「형량」 관련 요청

- 법정형이 동일하고 성격이 유사한 다른 죄종에 비해 감경 형량 범위 기준이 낮고 하한도 없어(8월↓) 실형이 선고되더라도 처벌이 미약

※ (감경 형량 범위) 특수폭행의 경우 2월~1년2월 범위, 위증의 경우 10월↓

▶ **실효적인 처벌과 재발 방지를 위한 형량 범위 상향 및 하한 설정**

◦ 감경 요소에 「처벌불원」 제외 요청

- 국가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죄종임에도, 폭력 범죄와 마찬가지로 특별 양형 인자 감경 요소 및 집행유예 참작 사유에 '처벌불원' 포함

※ 실제로 ‘처벌불원’이 양형 감경 요소 및 집행유예 참작 사유로 고려됨
으로써 실형 대신 벌금형·집행유예 선고가 빈번, 국민의 양형에 대한
인식과 배치

▶ 특별 양형 인자 감경 요소 및 집행유예 참작 사유의 ‘처벌불원’ 제외

◦ 가중 요소에 「상습범」 추가 요청

- 특별 양형 인자 행위자 관련 가중 요소로서 특수폭행 등에 포함된 ‘상
습범’이 공무집행방해 범죄의 양형 인자에는 불포함

※ 특수폭행의 경우 특별양형인자 행위 관련 가중 요소로 ‘반복적으로 범
행한 경우’를 규정하면서도, 행위자 관련 가중 요소로 ‘상습범인 경우’
를 함께 규정

▶ 특별 양형 인자 행위자 관련 가중 요소로서 ‘상습범인 경우’ 추가

◦ 「음주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관련

- 음주문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에도 여전히 주취 상태를 심신미약
의 일종으로 보아 양형 감경 요소로 고려하는 것은 국민의 인식과 괴
리

· 양형 감경 요소로 확대·악용되지 않도록 기준을 구체적·세분화 필요

※ 범행의 고의가 없었고 범행 수행을 예견하지 못하였다면 여전히 주취
상태를 감경 요인으로 고려할 수 있는 가능성 존재

▶ 주취 상태를 일반적인 ‘심신미약’과 구분하여 양형 인자에서 제외

(2) 동물대상범죄 양형기준 신설 요청

1) 현황분석

◦ 동물대상범죄 처벌 현황(경찰청 통계·법원행정처 「사법연감」 기준)

- 반려동물 증가와 함께 「동물보호법」 위반 등 동물대상범죄의 발생 건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

< 연도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발생·검거건수 및 검거인원(경찰청 통계)>

구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발생건수(건)	69	98	131	132	233	238	304	398	531	914
검거건수(건)	64	89	118	113	198	204	304	323	416	723
검거인원(명)	78	113	138	150	262	264	331	459	589	962

- '17년 이후 「동물보호법」상 동물대상범죄에 대한 법정형이 점진적으로 상향*되면서, 재산형이 아닌 자유형 선고 비율도 급증

*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한 동물학대행위에 대하여, ①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11.8.4. 개정) → ②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17.3.21. 개정) → ③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20.2.11. 개정)

◦ 동물대상범죄 판례 및 양형 분석

- 양형 가중 요소로서 피고인의 범행수법이 주요하게 고려되고, 폭력 관련 범죄 등의 범죄 전력도 고려하는 경향

- 양형 감경 요소로서 피고인의 범행 반성·자백이 주요하게 고려되고, 동물을 관리하는 소유자·보호자의 처벌불원 의사도 고려하는 경향

◦ 동물대상범죄에 대한 인식 조사

- 동물대상범죄에 대해 국민이 느끼는 범감정과 실제 처벌 사이에 괴리가 있다는 지적과 이어져 각종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요청

- 동물보호법위반 법정형은 강화되었으나, 실제 선고되는 처벌 수위가 낮아, 강화된 벌칙 적용을 요구하는 사회 전반의 목소리가 높음

※ '고양이 학대 오픈채팅방 수사 및 처벌요구' 국민청원 관련 27만명 동의(2.6)

2) 동물보호단체 등 관계 기관 입장

◦ 동물 관련 민간단체 의견

- 동물보호단체는 '10~'19년간 동물보호법위반 1심 피고인 277명* 중 10명만 실형선고를 받았음을 제기하며, 적절한 양형기준 필요성 제기

* 1심 피고인 277명 중, △징역형 39명(실형 10명) △벌금형 183명 △

선고유예 등 55명

- ▶ “동물이 죽었다는 것은 가장 극심한 신체 침해를 당한 죽음이잖아요. 최고형량 3000만원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을 봤을 때, 벌금 300만원은 정말 솜방망이 처벌이다.” (동물자유연대)
- ▶ “동물 학대 행위에 따른 처벌 조항이 있지만 사법기관이 집행유예나 벌금형에 그쳐 경각심을 갖지 못하게 되는 측면이 많다.” (동물권행동 카라)
- ▶ “법원에서 동물학대범죄 사건 양형기준을 마련하여 범행수법, 피해동물 수, 전력 등을 고려한 양형을 통해 처벌 수위를 높일 필요가 있다.”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

◦ 법무부 입장

- 법무부는 동물의 법적 지위*를 재조명(비물건화)하고 압류 등을 금지하는 내용의 「민법」 및 「민사집행법」 개정 추진('21. 하반기)

* 「민법」상 동물의 법적지위는 물건에 해당

◦ 동물대상범죄 관련 언론·국회 입장

- 동물대상범죄 사건의 가벼운 처벌을 비판하는 기획성 기사 다수 보도

주요기사	△靑, '동물n번방' 처벌 강화... 대법원에 양형 기준 마련도- 한국일보('21.2.23.) △차 매달아 끌고, 3층 창문서 밀고... 갈 길 먼 동물 보호 - 쿠키뉴스('21.3.26.) △법만 개정하면 뭐하나... 잇따르는 동물 학대 - 스냅타임('21.4.2.) △반려견 때려죽인 20대 벌금형... 동물학대 또 솜방망이 처벌- 서울신문('21.4.5.) △'3년 이하 징역 동물보호법 판결은 솜방망이... "양형기준 정해야" - 이데일리('21.4.9.) △해마다 증가하는 동물학대... 처벌은 솜방망이 - 스카이드일리('21.4.14.)
------	---

- 다수 국회의원들은 동물대상범죄 사범에 대한 처벌 강화 취지 법안을 발의하고 있으며, 엄정 처벌 및 적극적인 대응 필요성을 지속 강조

- ▶ (법안발의) △'20. 11. 20. 동물보호법 개정안(김영호 의원 등) - 동물 사체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신설(500만원 이하 벌금) 및 동물 상해행위 금지
- △'21. 3. 9. 동물보호법 개정안(양금희 의원 등) - 동물 학대행위에 대한 중지명령의 불이행에 대한 처벌 신설(3년 이하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21. 3. 12. 동물보호법 개정안(김민석 의원 등) - 동물 사체 훼손행위 금지

3) 양형기준 신설 요청

◦ 동물대상범죄의 양형기준을 신설할 것을 요청

- 양형기준은 국민들로 하여금 동물대상범죄의 처벌 수위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하고 범죄의 예방에도 기여함
- 수사 단계에서도 사실상의 지표로 작용하므로, 엄정한 사법처리를 위

하여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양형기준 마련이 필요함

- 가중 요소에 「잔혹한 범행수법」 및 「계획적인 범행」 포함
 - 최근 화살, 밧줄, 흉기 등 잔혹한 도구를 이용하여 동물학대 행위가 이루어지고, 그 범행이 계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가중 요소로 고려 필요
- ※ △일반상해 △폭행범죄의 가중 요소로 ‘잔혹한 범행수법’과 ‘계획적인 범행’을 규정하고 있으며, 손괴범죄의 가중 요소로 ‘계획적인 범행’을 규정
- 가중 요소에 「피해가 상당히 중한 경우」 포함
 - 동물의 피해가 상당히 중한 경우에는 처벌이 엄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중 요소로 반영
- ※ 손괴범죄의 가중 요소로 ‘개인적 피해가 상당히 중한 경우’를 규정

라. 대한변호사협회

(1) 개요

양형위원회에서는 2021. 4. 27. 출범하는 제8기 양형위원회가 양형기준을 새롭게 설정하거나 변경할 필요성이 있는 범죄군, 연구·심의가 필요한 양형 정책에 관하여 대한변협에 의견을 묻는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1) 외국 법정형과 양형사례 조사, 2) 형량범위의 점진적 조정, 재검토기한 규정, 3) 금지규정, 처벌규정 기재 방식 통일, 4) 벌금형 양형기준에 관한 양형 정책 의견을 회신합니다.

(2) 제안 내용

1) 외국 법정형과 양형사례 조사

현행 양형기준은 법정형을 기준으로 몇 년 치의 판결들에서 확인되는 양형실무(양형통계자료)를 원칙으로 규범적 조정을 가하거나, 법관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마련되고 있습니다.

어느 재판부를 만나더라도 예측가능 한 일관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양

형기준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기본적인 방향에는 동의하나, 국민의 법감정과 법관들의 양형 사이의 괴리로 비판받는 부분을 조정하기 위해, 특정 유형의 범죄(예: 아동성착취물 관련 범죄)에 관련하여 새로 양형기준을 마련하거나, 향후 양형기준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해당 범죄를 대상으로 외국 법정형과 양형사례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물론 법정형은 나라별로 사회문화적 환경의 차이로 다르지만, 그와 같은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특정 국가에 한정하여 범죄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여러 나라에 거주하는 여러 국적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안에서, 외국 양형사례는 국내법이 허용하는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양형기준의 형량 범위를 마련할 때, 규범적 조정을 가할지 여부, 규범적 조정을 어느 정도 가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2) 형량 범위의 점진적 조정, 재검토기한 규정

양형기준은 몇 년 치의 판결에서 확인되는 양형실무를 반영하여 제정하거나 수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 인식의 변화로 기존의 양형실무가 충분하지 않다는 고려하에 양형기준을 변경할 필요가 있더라도 단기간에 급격하게 양형을 달리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이에 기존에 선고되었던 사건들에서 급격하게 양형이 달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형량 범위의 변화가 보수적으로 잡혀 있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단기간에 급격한 변화를 방지하면서도 종국적으로는 목표한 형량 범위에 도달하기 위하여, 양형기준을 처음 마련하거나 수정안을 의결할 때, 형량 범위를 점진적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의결하는 방안(예: 양형기준안 제정 시 형량범위 4년-8년, 1년 후 4년 6개월-8년 6개월, 2년 후 5년-9년)을 필요에 따라, 일부 범죄의 양형기준안에 도입하는 정책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또한 점진적 조정을 포함한 양형기준안이나, 법정형을 크게 바꾼 범죄여서 기존 양형실무를 대상으로 조사할 수 없었던 양형기준안을 대상으로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양형기준안을 재검토(논의)하도록, 양형기준에 재검토기

한 규정을 집어넣은 채 의결하는 정책의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더 나아가 제도, 사회, 국민들의 인식, 기술의 변화로 시간이 지나면 개별 범죄에 대한 적절한 양형이 무엇인지 재논의가 필요하므로, 모든 양형기준안을 대상으로 제정하거나 수정한 후로부터 일정한 기간(예: 10년 혹은 20년)이 지나면, 재논의를 하도록 하는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더 나아가 일부 양형기준안을 대상으로 하는 재검토 규정과 달리 모든 양형기준안을 대상으로 하는 재논의기한을 법원조직법에 도입할 필요도 같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3) 금지규정과 처벌규정 기재 방식 통일

현재 시행 중인 변호사법위반죄 양형기준, 근로기준법위반죄 양형기준, 석유사업법위반죄 양형기준 등은 유형의 정의 중 적용법조란에 처벌규정과 금지규정을 모두 명시하고 있습니다. 반면 증권·금융범죄 양형기준, 식품·보건범죄 양형기준 등에서도 마찬가지로 처벌규정만 적용법조에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더 나아가 대부업법·채권추심업법위반죄 양형기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양형기준 등은 금지규정을 유형의 정의 중 구성요건란에 직접 명시하면서, 적용법조란에서는 처벌규정만 명시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양형위원회에서 새롭게 제정하거나 수정하는 양형기준안을 보더라도,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은 적용법조란에 처벌규정과 금지규정을 같이 명시하고, 환경범죄 양형기준안은 적용법조란에 처벌규정만을 명시하고 있는 등 통일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향후 제정하거나 수정할 양형기준안에는 금지규정과 처벌규정의 기재 방식을 통일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 외 양형기준안 기재 방식에 통일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양형위원회 내부적으로 통일된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4) 벌금형 양형기준

현재 양형기준은 원칙적으로 징역형을 대상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

데 선거범죄의 경우 제한적으로 벌금형을 대상으로도 양형기준을 마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벌금형에 대한 양형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범죄의 벌금형을 대상으로 양형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어렵더라도, 1) 가장 많은 벌금형의 선고가 있는 범죄, 혹은 2) 해당 범죄의 유죄 건수 중 벌금형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으면서도 일정한 건수 이상의 벌금형 선고가 있는 범죄를 대상으로는, 벌금형을 대상으로 양형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판부 사이의 편차를 줄이고 국민으로 하여금 예측가능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은 징역형뿐만 아니라 벌금형에도 공통되며, 재판부에 양형에 관한 무제한의 재량이 부여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적어도 위 1), 2)의 범죄를 대상으로는 벌금형 양형기준을 마련하여, 수많은 벌금형 선고에 일정한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 대한법무사협회

- 달리 제시할 의견이 없음

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 제8기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설정·변경 대상 범죄군 등에 관한 의견요청에 대하여 ‘아동학대 범죄관련 양형기준에 관한 의견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1) 범죄군에 대한 의견

- 현재 양형기준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중상해·치사에 관하여만 양형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살해한 경우에 대하여는 달리 양형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2021. 3. 16. 일부개정되어 ‘아동학대살해’ 범죄의 새로운 구성요건이 마련되었으므로, ‘아동학대살해’ 범죄에 대한 별도의 양형기준을 마련할 필

요가 있습니다.

- 현재 양형기준은 「아동복지법」상 일부 금지행위(유기·방임, 신체적·정서적·성적 학대행위)로 인하여 중상해 내지 치사의 결과에 이른 경우에 관하여만 양형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아동학대범죄로 정의하는 「아동복지법」상 금지행위인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아동에 대한 성적·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 자신이 보호·감독하는 아동에 대한 유기·방임행위, 장애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을 하는 행위, 아동에게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거나 이를 위해 제3자에 인도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별도의 양형기준을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동학대범죄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아동복지법」 위반 사건이며, 해당 사건이 기소되어 형사공판에 이른 건수가 2018.에는 535건³⁾, 2019.에는 594건⁴⁾, 2020.에는 651건⁵⁾에 이를 정도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바, 아동학대범죄 관련 양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의 신설이 필요합니다.

(2) 개별 양형인자에 관한 의견

(가) 들어가며

귀 위원회에서는 아동학대범죄 관련 양형에 있어 아동학대 중상해·치사에 관한 양형기준만을 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아동학대범죄 유형에 대한 개별 양형인자 관련 의견을 드리기 곤란한 사정이 있습니다. 다만, 양형기준의 같은 장에 서술된 체포·감금 범죄와 유기·학대 범죄 유형에 있어, 피해자가 아동일 경우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범죄로서 규율될 수 있고, 유기 등의 범죄 유형은 아동학대범죄와 유사하게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관계의 특수성이 양형인

3) 법원행정처, 2018 사법연감, 938면 참조

4) 법원행정처, 2019 사법연감, 954면 참조

5) 법원행정처, 2020 사법연감, 962면 참조

자로서 고려될 필요가 있는 등의 공통점이 있다 할 것입니다. 이에 아래에서는 귀 위원회의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양형기준 일반의 개별 양형인자에서 피해자로서의 아동의 특수성과 아동학대범죄의 특수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나) 체포·감금 범죄 부분에 관하여

1) 감경요소

구분	현행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의견
특별 양형인자	행위 체포·감금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정의 요소 중 ‘피해자의 인식 결여’ 관련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정의 요소 중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범행에 나아간 경우’ 관련
행위자 / 기타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 일 반양형인자로 수정

가) 체포·감금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체포·감금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양형인자의 정의를 살펴보면, 일반적인 정의인 ‘체포·감금 시간이 극히 짧은 경우’, ‘체포·감금 과정에서의 유형력, 위계, 기망, 협박 등의 정도가 극히 경미한 경우’, ‘피해자를 일시적으로 감금하면서 감금장소 내에서의 신체적 활동이나 외부와의 연락을 허용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뿐 아니라 ‘체포·감금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결여’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범죄에 대하여 사실상 방어가 불가능한 아동인 경우, 체포·감금에 대하여 인식이 결여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피해자의 나이와 취학 여부 등을 반영하지 않고 ‘체포·감금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결여’를 일률적인 감경사유로 삼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나)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양형인자의 정의를 살펴보면, ‘피해자로부터 자신이나 친족이 장기간 가정폭력 등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당하여 피해자를 격리하기 위하여 범행에 나아간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뿐 아니라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범행에 나아간 경

우’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민법」상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이고, 가해자가 미성년자의 친권자 내지 미성년후견인인 경우 인정되는 ‘거소지정권’의 행사가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범행에 나아간 경우’에 해당하는 정당한 권리의 행사로 인정되지 않도록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민법」상 친권자의 징계권 조항이 2021. 1. 26. 아동학대 가해자인 친권자의 항변사유로 이용되는 등 아동학대를 정당화되는 데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삭제⁶⁾된 점에 비추어, ‘거소지정권’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다)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양형인자의 정의에 따르면,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뉘우치고, 피해자 또는 유족이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하며 ㉡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피해자 또는 유족과의 합의에 준할 정도의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경우도 포함한다고 합니다.

한편, 유기·학대 내지 아동학대중상해·치사 범죄의 양형인자 정의와 달리 ‘피해자가 미성년자, 장애인, 친족 등에 해당하는 때에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나이, 지능 및 지적 수준에 비추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가지는 의미, 내용, 효과를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러한 의사표시가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세밀하고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이에 해당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 귀 위원회께서는 양형의 대원칙은 ‘행위책임의 원칙’이고 그에 따라 행위인자를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취급하나, 살인, 성범죄 등 일부 범죄 등에 있어서는 행위자/기타인자 중 피해자 또는 유족의 ‘처벌불원’을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하도록 하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며, 이는 피해 회복을 통해 피해자 보호라는 형사정책적 목적

6) 법제사법위원회 제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107250, (2021. 1. 8.) [원안가결], 3면 참조

을 달성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⁷⁾ 체포·감금 범죄가 개인적 법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며, 회복적 사법의 관점에서 범죄자가 피해자와 갈등을 완화하고 화해를 위해 노력하여 피해자의 처벌불원을 통해 공동체의 회복을 달성하는 결과를 이끌어냈다는 점⁸⁾ 등에 비추어 볼 때 귀 위원회께서 ‘처벌불원’을 특별감경인자로 정한 것은 일응 타당해보입니다.

- 그러나 자유권, 자기결정권과 같은 일신전속적인 법익은 그 속성상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법익입니다.⁹⁾ 체포·감금의 범죄는 신체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동시에,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 ‘왜곡되지 않은 자기결정권을 형성할 권리’ 및 ‘건강한 발육을 위해 보호받을 권리’까지를 보호법익에 포함한다고 보아야 마땅합니다. 아동·청소년이 아직 신체적, 정신적 성장이 마쳐지지 않은 발달과정에 중에 있다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아동·청소년은 신체적으로뿐만 아니라 인격적으로 그 완성체를 형성해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아동·청소년에 대한 범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는 그 피해의 정도를 계량할 수 없고, 그 피해는 개념상 사후적으로라도 회복되거나 전보될 수 없는 성질의 것입니다.¹⁰⁾
- 한편,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상당금액을 공탁하는 것은 경제적으로나마 피해자의 손해를 전보한다는 근거로 감경요소로서의 정당성을 갖습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는 피해 아동·청소년에게 그 개념상 회복할 수 없는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므로, 그 피해는 공탁을 통해 경제적으로도 전보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상당금액공탁’ 자체가 자칫 경제적 능력이 형사책임의 정도를 좌우하는 현상을 유발하거나 심화시킬

7) 양형위원회, 앞의 책, 669면 참조

8) 김혜경, “피해자 관련적 양형인자에 대한 비판적 고찰”, 피해자학연구 26.2, 한국피해자학회, 2018, 153면 참조

9) 김혜경, 위의 논문, 164면 참조

10) 이진화, “합의와 공탁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의 양형에 미치는 영향”, 사법 통권 통권 31호, 사법발전재단, 2015, 46-49면 참조, 위 논문의 저자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에 관하여 서술하였으나, 일반적인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측면이 있다고 보아 그 내용을 변형하여 인용함

수 있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으므로,¹¹⁾ 이를 특별감경인자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 아동·청소년에 대한 범죄의 특유함으로 인하여 그 개념상 회복할 수 없는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므로, 피해자의 처벌불원 등을 특별감경인자라고 인정하여야 할 정당성이 상당히 훼손됩니다. 다만 피고인이 방어권의 행사로서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였다는 측면에서 처벌불원 등을 양형요소로서 판단하여줄 필요가 있습니다.¹²⁾ 따라서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 양형의 대원칙인 ‘행위책임의 원칙’을 적용하여 처벌불원 내지 상당금액공탁을 양형의 일반감경인자로 다루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 한편, 양형조사의 측면에서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 피해자의 나이, 지능 및 지적 수준에 비추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가지는 의미, 내용, 효과를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러한 의사표시가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세밀하고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이에 해당되는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양형조사 과정에서 피해 아동·청소년의 의사에 대한 진정성 재고는 매우 중요한데, 그 이유는 피해 아동·청소년이 학대 상황에서와 마찬가지로 항거불능의 상태로 가해자와의 합의를 종용받을 수 있고,¹³⁾ 가해자가 부모이고 피해자가 자녀인 경우 부모를 처벌했을 때의 자책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 아동·청소년의 발달단계상의 특성이기 때문입니다.¹⁴⁾ 또한 피해 아동·청소년의 친권자 또는 다른 가족, 미성년 후견인 등이 아동·청소년의 의사를 무시하고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여 그 피해가 심화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실무상 2009. 이래로 법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양형조사제도’에 아동·

11) 이진화, 앞의 논문, 64면 참조

12) 이진화, 앞의 논문, 53면 참조

13) 이세원, “아동학대범죄에 관한 형사 판결 분석 연구: 아동복지법 위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67(2), 한국사회복지학회, 2015, 130면 참조

14) 이세원, “아동학대범죄 판결의 양형 인자에 대한 연구”, 사회복지법제연구 8.2, 사회복지법제학회, 2017, 139면 참조

청소년 대상 학대범죄의 처벌불원 등 판단에 있어 아동최선의 이익을 중점에 둔 구체적인 조사 절차와 방법에 관한 지침을 만들어 균질한 수준의 양형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 유기·학대 및 아동학대중상해·치사 범죄 부분에 관하여

1) 감경요소

구분	현행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의견
특별양형인자	행위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정의 요소 중 ‘피해자를 부양 또는 간호 하던 중 정상적인 판단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경우’ 관련
행위자 / 기타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 일반양형인자로 수정

가)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양형인자 정의를 살펴보면, ‘피해자로부터 자신이나 친족이 장기간 가정폭력 등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당하여 피해자를 격리하기 위하여 범행에 나아간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뿐 아니라 ‘피해자를 부양 또는 간호하던 중 정상적인 판단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경우’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때 ‘정상적인 판단력이 결여된 상태’는 범죄자의 주관적인 상태에 해당하여, 정상적인 판단력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농후함에도 판단력 결여를 주장하며 감형을 시도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 피해자를 부양하는 가해자는 통상 피해자에 대한 부양의무가 있는 존속 관계에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기·학대 및 아동학대중상해·치사 범죄에서 ‘존속인 피해자’를 특별가중인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특별감경인자와 특별가중인자는 그 개수를 기준으로 상쇄되므로, 피해자와 가해자가 존속관계에 있는 사

건에서 각 인자는 상쇄되어 ‘특별’ 가중 내지 감경인자로서의 역할이 무색하게 됩니다. 설령 피해자와 가해자가 존속 관계가 아니더라도 자신을 부양하는 가해자와의 관계에서 피해 아동·청소년은 사실상 방어가 불가능한 상태에 놓여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그 죄질을 더욱 중하게 보아야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에서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사건의 경우,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양형인자의 정의 요소 중 ‘피해자를 부양 또는 간호하던 중 정상적인 판단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경우’ 를 제외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나)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양형인자의 정의에 따르면,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뉘우치고, 피해자 또는 유족이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하며 ㉡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피해자 또는 유족과의 합의에 준할 정도의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경우도 포함하고 ㉢ 피해자가 미성년자, 장애인, 친족 등에 해당하는 때에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나이, 지능 및 지적 수준에 비추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가지는 의미, 내용, 효과를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러한 의사표시가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세밀하고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이에 해당되는 경우만을 포함한다고 합니다.
- 위 (2) (나) 1)의 다)항과 같은 의견입니다(‘체포·감금 범죄’에 ‘유기·학대 및 아동학대중상해·치사 범죄’를 대입).

사. 농림축산식품부

◆ 반려동물 양육가구 증가와 함께 동물학대 행위 지속 발생*으로 학대행위 근절을 위해 처벌 강화 필요

*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접수(검찰) : ('15) 293건 → ('17) 530 → ('19) 1,098

○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동물학대에 대한 벌칙 수준을 지속 강화했으나 법원의 실제 양형이 미미하다는 비판 존재

○ 동물학대가 사람에 대한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동물학대행위자에 대한 선고 형량을 높일 필요

◆ 이에, 동물학대 처벌의 양형기준 마련을 요청하여 동물학대에 대한 변화된 사회적 인식에 맞춰 처벌을 강화하고자 함

(1) 요청배경

□ 반려동물 및 반려동물 양육가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동물대상 학대 행위 사건 지속 증가**에 따라 언론 및 대국민 관심 증가

* 전체 가구 중 반려동물 양육 가구 비율(%) : ('10) 17.4 → ('15) 21.8 → ('19) 26.4

** 「동물보호법」 위반 검찰 사건접수(건) : ('15) 293 → ('17) 530 → ('19) 1,098

○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동물학대에 대한 벌칙 수준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 낮지 않으나 법원의 실제 양형이 미미**하다는 비판 존재

* ('91제정) 2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 → ('08) 500만원 이하의 벌금 → ('11) 1년이하의 징역/1천만원 → ('18) 2년/2천만원 → ('21)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는 3년/3천만원

-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법원의 실제 판결은 대부분 벌금형

* 동물보호법 위반 1심 판결 중 재산형 : ('15) 17건(85%) → ('17) 24(48%) → ('19) 38(63%)

** '19년 1심 판결 60건 : 유기 5, 집행유예 8, 재산형 38(집행유예 3 포함), 선고유예 2, 기타 7

- 동물학대에 대한 국민 인식 변화('20년 동물보호 국민의식 조사 결과)
 - (학대 목격 시 행동) '경찰 등 국가기관 신고' (53.4%), '동물보호단체 도움 요청' (48.4%), '학대자에게 직접 중단 요청' (23.4%) 순으로 조사돼(복수응답) 학대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음을 알 수 있음
 - (처벌 필요성) 모든 항목에서 과반수 이상의 응답자가 '법적 처벌 필요' 이 필요하다고 보았으며, 특히 '동물을 물리적으로 학대하는 행위(구타, 방화 등)' 는 96.3%가 처벌이 필요하다고 응답함
- 개, 고양이 등 동물학대와 관련하여 학대자 처벌 강화를 요청하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꾸준히 제기
- (주요내용)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이 약하여 동물학대를 실질적으로 예방할 수 없음
- (주요답변) 동물학대 범위 확대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양형기준 마련을 통한 처벌 강화 등 추진
- * 동의자가 20만명 넘는 동물학대 관련 청원 : '19년 3건, '21년 1건
- 범죄학자 등 전문가의 범죄 분석·조사를 통해 동물학대가 사람에게 대한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을 알 수 있으며,
-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동물학대가 심각한 범죄임을 인식시키고, 사람에게 대한 범죄로 발전할 수 있는 고리 차단 필요
 - '60년대부터 범죄학자들은 연쇄살인범의 전형적인 징후를 '동물학대' 로 보고 있고, 강간범의 48%, 아동성범죄자의 30%가 '동물학대' 와 관련 있는 것으로 보고 있음
- * 강호순, 이영학 등 흉악범의 과거를 보면 어린시절에 동물을 학대한 공통점 있음
- ** 미국 연방수사국(FBI)은 '16년부터 동물학대는 살인사건 만큼 중요한 사건으로 인식하여, 반사회적 범죄로 분류

〈 동물학대와 사람에게 대한 범죄 연관성 연구 사례 〉

연구연도	연구기관 또는 연구자	연구 내용
1997	보스턴 노스이스턴대	동물학대자의 70%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다른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으며, 40%는 사람에 대한 폭력 범죄 저지름 * 살인범의 46%에서 동물학대 흔적 발견
2005	박충민	FBI 연쇄살인범 387명 분석 결과 인간을 상대로 가학적 행위를 시작하기 전 동물들을 상대로 충분한 연습기간을 거침

(2) 관련 단체 주요 의견

- 피해 대상이 동물이라 양형기준이 낮고, 초범 등의 이유로 실형을 선고 받지 않은 경우 많음('19.7월,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박주연 대표)
- 현행법의 최대 형량만큼 선고 필요('19.7월, 동물자유연대 조희경 대표)
- 대법원 양형기준에 동물학대죄에 대한 기준이 없으며 공식적 기준이 마련되기를 희망('19.11월,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서국화 공동대표)
-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기 때문에 양형기준 마련 필요('20.2월,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권현정 변호사)
- 초범 등 이유로 동물보호법에 명시된 형량보다 훨씬 못 미친 판결 선고, 동물 범죄 처벌을 사회 인식에 맞게 개선 필요('20.12월, 동물권행동 카라 김현지 활동가)
- 법적 처벌 조항이 아니라 실제 얼마나 처벌받는지 문제('21.4월, 동물자유연대 채일택 팀장)
- 더 엄한 판결을 내리는 사례가 늘어나 동물학대가 중범죄라는 인식이 사회에 확대되기를 희망('21.4월,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서국화 공동대표)

(3) 관련 언론보도

- 동물학대 1,500여건 중 구속은 1명 뿐('19.7.29, 한국경제)

- 동물학대 솜방망이 처벌 비판 커진다(‘19.8.8, 경향신문)
- 동물학대에 이례적 실형... 법원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생명존중 태도 찾아보기 어려워” (‘19.11.22, KBS)
- 5년간 동물학대 구속기소 0.1%...3,398명 중 단 2명(‘20.12.13, 프레시안)
- ‘화살’ 쏘도 집행유예... ‘솜방망이’ 동물학대 처벌(‘20.12.18, 쿠키뉴스)
- 손가락 물었다고 반려견 때려죽인 20대 벌금형... 시민들 “솜방망이 처벌” ‘공분’ (‘21.4.5, 아시아경제, 서울신문)
- 동물보호법 상 동물학대는 ‘3년 이하 징역’, 실제 판결은 솜방망이... “양형 기준 정해야” (‘21.4.9, 이데일리)

(4) 요청사항

- 동물학대에 대한 변화된 사회적 인식에 맞추어 강화된 벌칙이 적용될 수 있도록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학대 행위 처벌의 양형기준 마련 요청

VI. 각종의견 접수 및 처리

1. 제이티비씨(JTBC)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범죄 수정 양형기준 관련 질의>

가. 질의 내용

- (1) 벌금형이 왜 기준‘안’에도 들어가지 않았는지 여쭙습니다.
 - 판결의 절반 이상이 벌금형이고, 실제 평균 400~500만원 수준의 벌금형에 대한 지적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벌금에 대한 기준이 없는 이유는 무엇일지요.
- (2) 양형기준 적용범위를 보더라도, "징역형과 병행해 제시할 수는 있다"고도 되어 있는데 벌금형에 대한 양형기준을 제시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3) 실제로 산안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2%대)고 알고 있는데요. 해당 양형기준이 어떤 실효성이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 (4) 추후에라도 산안법 위반 벌금형 관련 양형기준을 마련할 계획은 없으신지 여쭙습니다.
 - 만약 있으시다면, 언제쯤 현재 어떤 논의 단계인지 궁금합니다.

나. 공개질의에 대한 답변

- (1) 양형위원회와 양형기준에 깊은 관심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2) 양형위원회는 2020. 7. 13. 양형위원회 제103차 회의에서 과실치사상 범죄 양형기준 중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부분 수정 작업에 착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당시 양형기준 수정과 관련하여 결정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범죄의 독립적인 양형기준 편제 여부를 포함하여, 설정 범위, 유형 분류, 형량 범위, 양형 인자, 집행유예 기준 등을 다시 검토하기로 함
-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범죄의 벌금형 양형기준 마련은 제7기 양형위원회에서 진행하지 않고 추후 과제로 함. 그 이유는 아래와 같음
 - 현재 벌금형 양형기준은 선거범죄를 제외하고는 마련되어 있지 않음
 - ① 벌금형은 약식명령으로도 과할 수 있는데, 벌금형 양형기준까지 설정하면 약식명령 청구와 판단 과정에서 양형기준을 검토하여야 하고, 그로 인하여 약식명령 처리가 지나치게 지체될 우려가 있음
 - ② 법관의 양형편차를 시급히 줄일 필요가 있는 것은 징역·금고형이었음. 선거범죄는 벌금형 액수에 따라 피선거권 박탈 등 중요한 법률효과가 따르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벌금형에 대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상황임
 - 사법정책연구원에서 올해 벌금형의 양형기준 설정 가능성을 타진하는 연구 진행 중임: 연구 결과에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벌금형 양형기준 마련 여부를 정함이 타당

(3) 양형위원회는 2021. 3. 29. 양형위원회 제108차 회의에서, 관계기관 의견조회 및 공청회 등에서 제시된 산업안전보건범죄의 벌금형 양형기준 설정 요청에 관하여 논의하였으나, 위와 같은 이유와 제7기 양형위원회의 임기, 벌금형 양형기준 설정이 현재까지 설정된 양형기준 체계에 미치는 영향, 형사재판 실무에 미치는 파급력 등 사정을 고려하여, 벌금형 양형기준은 양형위원회의 추후 과제로 두기로 결정하였습니다.

(4) 제8기 양형위원회가 2021. 4. 27. 출범하여, 2021년 상반기 중 양형위원회의를 개최하여 제8기 양형위원회가 설정·수정할 양

형기준 대상 범죄군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벌금형 양형기준 설정 여부를 포함한 다양한 쟁점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5)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 '양형위원회에 바란다' 접수 의견 보고

가. 개요

- 양형위원회의 활동 및 양형에 관한 정책 건의, 제안 등을 듣고자 하는 국민 참여 공간인 '양형위원회에 바란다'(http://sc.scourt.go.kr)에 접수된 의견 보고

나. 회신 완료 접수 의견(2021. 05. 09.까지 총 1,366건): 동일 요지 의견에 대해서는 동일한 취지로 회신함

연번	접수일자(접수건수)	의견요지
1	2021.01.31. ~2021.05.09.(568)	○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강화 요청
2	2021.01.31. ~2021.05.09.(769)	○ 아동학대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요청
3	2021.01.31. ~2021.04.08.(21)	○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강화 및 강력한 처벌 요청
4	2021.02.03. ~2021.02.04.(2)	○ 법률상담 요청
5	2021.02.24. ~2021.05.10.(4)	○ 개별사건 처벌과 관련한 반복민원

연번	접수일자(접수건수)	의견요지
6	2021.04.30.(2)	○ 재판관련 탄원

○ 1번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 양형위원회에 바란다를 통하여 양형위원회에 접수된 귀하의 민원서에 대한 회신입니다.
- 먼저, 양형과 관련한 귀한 의견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 귀하의 의견에 관하여는 양형위원회 회의 또는 전문위원 전체회의에 보고하여 향후 양형위원회 회의나 전문위원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 보내주신 의견은 양형기준의 전반적인 보완 과정에서 충실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양형위원회는 형사재판에서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양형기준을 설정·변경하고 양형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의결기관으로 개별사건에 대하여는 양형위원회에서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 2번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 양형위원회에 바란다를 통하여 양형위원회에 접수된 귀하의 민원서에 대한 회신입니다.
- 먼저, 양형과 관련한 귀한 의견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 귀하의 의견에 관하여는 양형위원회 회의 또는 전문위원 전체회의

에 보고하여 향후 양형위원회 회의나 전문위원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 보내주신 의견은 양형기준의 전반적인 보완 과정에서 충실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양형위원회는 형사재판에서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양형기준을 설정·변경하고 양형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의결기관으로 개별사건에 대하여는 양형위원회에서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 3번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 양형위원회에 바란다를 통하여 양형위원회에 접수된 귀하의 민원서에 대한 회신입니다.
- 먼저, 양형과 관련한 귀한 의견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 귀하의 의견에 관하여는 양형위원회 회의 또는 전문위원 전체회의에 보고하여 향후 양형위원회 회의나 전문위원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 보내주신 의견은 양형기준의 전반적인 보완 과정에서 충실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양형위원회는 형사재판에서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양형기준을 설정·변경하고 양형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의결기관으로 개별사건에 대하여는 양형위원회에서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 4번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 접수 취소 요청으로 별도의 회신 없이 공람 종결하였습니다.

○ 5번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 반복민원으로 별도의 회신 없이 공람 종결하였습니다.

○ 6번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 양형위원회에 바란다를 통하여 양형위원회에 접수된 귀하의 민원서에 대한 회신입니다.
- 먼저, 양형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양형위원회는 형사재판에서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양형기준을 설정·변경하고 양형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의결기관으로 개별사건에 대하여는 양형위원회에서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다. 회신 미완료 접수의견(2021. 5. 15.까지 접수된 의견 중 미회신 의견, 총 9건)

- ▶ 동일 요지 의견에 대해서는 동일한 취지로, 빠른 시일 내에 회신할 예정입니다.

연번	접수일자(접수건수)	의견요지
1	2021.02.26.(1)	○ 홈페이지 개선의견

2	2021.04.03.(1)	○ 수정 양형기준 의결 관련 질의
3	2021.05.10. ~2021.05.15.(5)	○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강화 요청
4	2021.05.12.(1)	○ 공탁과 관련하여 양형기준 개선 건의
5	2021.05.14.(1)	○ 사기범죄, 성범죄, 폭력범죄의 양형기준 강화 요청

3. 서면 질의 등 민원 및 회신

가. '국민신문고 게시판'

○ 회신 완료 접수의견(2021. 05. 09.까지 총 16건)

순번	접수일자(접수건수)	질의요지
1	2021.03.22.(1)	○ 사기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강화 요청
2	2021.03.23. ~2021.04.26.(11)	○ 형사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강화 요청
3	2021.03.29.(1)	○ 합리적인 양형기준을 요청하는 내용
4	2021.04.04.(1)	○ 공무집행방해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강화 요청
5	2021.04.27.(1)	○ 음주운전과 관련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강화 요청
6	2021.05.04.(1)	○ 양형기준 적용 시점에 대한 문의

○ 1번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양형위원회에 접수(2021. 3. 22. 접수번호:2AA-2103-0928319)된 귀하의 민원서에 대한 회신입니다.
- 먼저, 양형과 관련한 귀한 의견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 귀하의 의견에 관하여는 양형위원회 회의 또는 전문위원 전체회의에 보고하여 향후 양형위원회 회의나 전문위원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 2번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양형위원회에 접수(2021. 3. 23. 접수번호:2AA-2103-0996142)된 귀하의 민원서에 대한 회신입니다.
- 먼저, 양형과 관련한 귀한 의견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 귀하의 의견에 관하여는 양형위원회 회의 또는 전문위원 전체회의에 보고하여 향후 양형위원회 회의나 전문위원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 3번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양형위원회에 접수(2021. 3. 29. 접수번호:2AA-2103-1232079)된 귀하의 민원서에 대한 회신입니다.
- 먼저, 양형과 관련한 귀한 의견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 귀하의 의견에 관하여는 양형위원회 회의 또는 전문위원 전체회의에 보고하여 향후 양형위원회 회의나 전문위원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 4번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양형위원회에 접수(2021. 4. 4. 접수번호:2AA-2104-0100692)된 귀하의 민원서에 대한 회신입니다.

- 먼저, 양형과 관련한 귀한 의견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 귀하의 의견에 관하여는 양형위원회 회의 또는 전문위원 전체회의에 보고하여 향후 양형위원회 회의나 전문위원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 5번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양형위원회에 접수(2021. 4. 27. 접수번호:2AA-2104-1150965)된 귀하의 민원서에 대한 회신입니다.
- 먼저, 양형과 관련한 귀한 의견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 귀하의 의견에 관하여는 양형위원회 회의 또는 전문위원 전체회의에 보고하여 향후 양형위원회 회의나 전문위원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 6번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양형위원회에 접수(2021. 5. 4. 접수번호:2BA-2105-0141473)된 귀하의 민원서에 대한 회신입니다.
- 먼저, 양형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양형기준의 적용시기와 관련하여 양형위원회 운영규정은 공소제기일을 기준으로 적용시기를 정하고 있습니다. 양형위원회 홈페이지

(<http://sc.scourt.go.kr>) 정보광장 코너에도 관련법령이 게시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 회신 미완료 접수 의견(2021. 05. 15.까지 총 2건)으로 빠른 시일에 회신할 예정입니다.

순번	접수일자(접수건수)	질의요지
1	2021.05.01.(1)	○ 폭력범죄 양형기준의 해석 및 적용에 대한 질의
2	2021.05.12.(1)	○ 음주운전과 관련된 범죄에 대하여 처벌 시 좀 더 세부적인 기준이 있으면 좋겠다는 내용

나. 민원 우편

○ 회신 완료 접수 의견(2021. 05. 09.까지 총 3건)

순번	접수일자(접수건수)	질의요지
1	2021.04.15. ~2021.04.30.(2)	○ 마약범죄의 양형기준 송부 및 포상금 제도에 관한 문의
2	2021.04.21.(1)	○ 양형기준 책자를 송부하여 달라는 내용

○ 1번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 양형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양형위원회로 접수된 귀하의 민원서(21. 04. 15.자, 21. 04. 30.자)에 대한 회신입니다.
- 귀하가 요청하신 마약범죄의 양형기준을 별첨과 같이 보내 드립니다.

- 양형위원회는 법원조직법 제81조의6 제4항, 양형위원회규칙 제6조에 따라 관보 게재,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등의 방법으로 양형기준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0 양형기준」 책자는 국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및 관계기관(교도소 포함) 등에 배포하였으므로 그곳에서 열람 및 복사가 가능하며, 양형위원회 홈페이지(<http://sc.scourt.go.kr>) 양형기준 코너에도 게시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양형위원회는 형사재판에서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양형기준을 설정·변경하고 양형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의결기관으로 포상금 제도에 대하여는 양형위원회에서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 2번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 양형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양형위원회로 접수된 귀하의 민원서(21. 04. 21.자)에 대한 회신입니다.
- 양형기준 책자는 재판 실무에서 양형기준을 적용하는 데 참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한된 수량만을 발간하고 있으며, 별도 판매나 제공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 양형위원회는 법원조직법 제81조의6 제4항, 양형위원회규칙 제6조에 따라 관보 게재,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등의 방법으로 양형기준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0 양형기준」 책자는 국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및 관계기관(교도소 포함) 등에 배포하였으므로 그곳에서 열람 및 복사가 가능하며, 양형위원회 홈페이지(<http://sc.scourt.go.kr>) 양형기준 코너에도 게시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

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